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70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유통금지(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등)	3
2.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44조의10 등)	16
3.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안 제44조의9)	23
4.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안 제44조의11 신설)	2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29.

다. 회 부 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

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9).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44조의11 신설).

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유통금지(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1항 제14호 신설).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44조 및 제44조의7 제2호의2).
-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2조 제1항 제1호의3 신설).
-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허위조작정보”란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u>정보</u>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u>정보</u>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u>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 -----<u>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항에 따른 정보</u>----- ----- ----- -----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3.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2. ~ 5. (생략)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u>2의2. 허위조작정보</u>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벌칙) ①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u> <u>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1호의3, 제2호----- ----- ----- ----- ----- -----. ----- -----.

다. 검토사항

- 최근 대선 관련 인터뷰 조작 논란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허위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2016헌마275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그럼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현행 법체계는 언론사의 허위보도만을 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하거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및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하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애 앞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상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통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등 구체적인 법익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익 침해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의 유통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¹⁾,

- 현행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

1)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 그런데 구체적인 법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없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처벌하고자 하는 법익 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미네르바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이 있었음³⁾.

○ 둘째,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권리침해정보)와 제44조의7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에 각각 추가하고자 하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권리침해정보와 불법정보의 규제체계를 달리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권리침해정보보다는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현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 ‘허위사실의 표현’이 일정한 경우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 불법정보에 포함되는지 논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해 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서 권리침해정보로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임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⁴⁾.

- 한편 제44조의7은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4)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내용규제 체계>

구분	권리침해정보(제44조)	불법정보(제44조의7)
의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규제방법	(제44조의2) 권리침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 제2항·제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안전, 사회의 신뢰 유지 등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유통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의 경우 제44조의 권리침해정보 체계보다는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 체계로 규율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셋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추징을 법률에 명시할 실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⁶⁾,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6)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얻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⁸⁾.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죄가 신설된다면 현행 법에 의해서도 이에 관한 몰수·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⁹⁾.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¹⁰⁾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8)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 3년)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7년) 모두 ‘중대범죄’에 포함됨.

9)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별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10) 의안번호 제2200352호,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

- **(허위조작정보 정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정치적 이익’ 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정보게재자가 사실로 믿을 근거가 충분했던 정보, 경과실로 오인한 정보 등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허위조작정보를 권리침해정보에 포함)**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선언적 조항으로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현행법으로도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며, 권리침해가 없음에도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만으로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 및 벌칙 부과)** 허위조작정보를 음란·도박 등 정보와 같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정보로서 유통을 제한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인 법익 침해가 없음에도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존재하고, 현행 불법정보 제도로 규율하기보다는 허위조작정보의 복합적

특성¹¹⁾을 고려한 별도의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사책임의 경우 허위사실 관련 유사 범죄와의 형량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수익 몰수·추징)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까지 몰수·추징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 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유통행위 등 몰수·추징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제적·정치적 이익등을 목적’,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과 같은 표현은 추상적이거나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하여 ‘거짓’, ‘왜곡’, ‘사실관계의 오인’ 등의 의미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거짓 또는 왜곡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없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를 직접 판단하는 경우 사적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어떠한 허위정보만을 보고 작성자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경제적·정치적 이익의 해석이 명확

11) 불법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 등 보호가치가 공존

하지 앓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의 판단이 어렵고
이에 따라 입법취지의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44조의10 등)

가. 개정안 요지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권리 침해정보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 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 ----- ----- ----- ----- -----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 ----- ----- ----- -----.

현행	개정안
②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4조의10(<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를 두되,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	②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0(<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① ----- ----- ----- ----- <u>정보 및 허위조작정보</u>----- ----- -----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②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 ----- ---. <삭제>

현행	개정안
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제44조의10에 따른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u>	④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u>필요한</u>----- -----. 제66조(비밀유지 등)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권리침해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함.
 - 이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을 규정한 것임.
 -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법률상 권리관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의 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을 대신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제3자의 조력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결과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신속성, 시간과 비용의 절약, 당사자 간 감정의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음¹²⁾.
- 개정안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정업무에 권리침해정보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분쟁도 포함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에 대한 간이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강화 방안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12.

- 첫째, 권리침해와 무관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에 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의해서도 이미 조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분쟁조정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침해와 무관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임.
- 그런데 이러한 분쟁의 경우 공익적·정책적 사안의 사실 여부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자가 광범위할 수 있는바, 이를 개인 간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 판단·중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³⁾.
- 둘째, 권리침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성격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특정되어 있고, 권리침해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측면이 있음.
- 반면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허위조작정보로 영향을 받는 자가 광

13) 공익적 요소가 강한 사건에 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결과가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김상태,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5집, 2009.8.)

범위하고,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사실과의 유사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함.

○ 이처럼 권리침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성격이 다름에도 양자에 관한 분쟁을 모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분쟁 조정에 효과적일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 부와 동일하게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조정이 위원회의 사무로 추가됨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어 보임.

- 참고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 1,802건, 2023년 1,540건에 달함.

<2022~2024.9.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업무처리현황>

연도	합계	접수처리								사무처 답변 등
		소계	조정 전 합의	조정 결정	정보 제공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2022	1,802	551	13	0	118	285	33	26	76	1,251
2023	1,540	685	18	0	101	423	29	28	86	855
2024.9.	1,076	414	9	0	66	206	32	47	54	662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은 현행 법률로써도 분쟁조정이 가능하고, 다른 법률에서의 분쟁조정 사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조정대상이 포괄적이므로 조정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3.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안 제44조의9)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안 제44조의9 제1항 제4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 ----- ----- ----- ----- ----- ----- -----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허위조작정보</u>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¹⁴⁾에 해당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¹⁵⁾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14)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5)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¹⁶⁾(“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¹⁷⁾.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¹⁸⁾.

○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에 개정안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도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성범죄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등과 허위조작정보의 성격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특히 현행 제44조의9 제2항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7)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8)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등’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동일함을 고려할 때¹⁹⁾ 정보통신망법에만 불법촬영물등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불법촬영물등과 달리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있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책임자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불법촬영물등과 허위조작정보는 성격 및 유통형태가 상이하므로 각 업무에 적합한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19)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등’과 동일하므로, 타 법률과의 체계성·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촬영물등과 비교하였을 때 보호 범의와 대상 및 범위가 상이하여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조문임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를 이에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와 정합해 보이지 않고, 해외사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곤란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 집행이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4.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안 제44조의11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손해를 입힌 자가 부담함(안 제44조의11 제1항).
-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제3항).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①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u>

현행	개정안
	<u>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u> <u>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u> <u>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u> <u>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u> <u>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 상태</u> <u>5.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u>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하려는 것임.
-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전문분야에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가해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²⁰⁾.
-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정보의 유형이나 해당 정보가 사실과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가 정보마다 상이하고, 모든 허위조작정보가 생성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나 비대칭적 정보를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위조작정보 일체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

20)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정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으로 평가되는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넓은 범위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 및 「형법」상 형사처벌과 중첩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유통할 때 스스로 제약을 가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악의성)이 있는 경우에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 억제를 주목적으로 과해지는 손해배상으로서,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이 어렵고, 허위 조작정보 유통이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타 사례²¹⁾와 유사한 정도의 악의성이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